

교정학개론 기출 해설

- 임 현

01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 ② 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한다.
- ③ 사회적 반응이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이다.
- ④ 사회학습 요소로 차별접촉, 차별강화, 애착, 모방을 제시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은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하여 비행을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파악한 이론이다.
- ② 청소년의 비행경로를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 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한 사람은 **패터슨(Patterson)**이다. 손베리(Thornberry)는 청소년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 초기 청소년기(11세~13세)에는 가정, 중기 청소년기(15세~16세)에는 친구, 학교, 후기 청소년기(18세~20세)에는 취업, 대학, 결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 ③ 일탈의 특성과 강도를 규정하는 원인은 **인습적 사회와의 결속의 약화와 비행친구 또는 비행적 가치와의 접촉**이다. 즉 손베리에 의하면 비행은 처음에는 부모, 학교, 전통적 가치 등으로 표현되는 인습적 사회와의 결속의 약화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 세 가지의 연결이 약화될수록 비행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와 더불어 비행친구 또는 비행적 가치와의 접촉은 비행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며 비행 자체가 다른 비행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④ 손베리는 비행의 근원적 원인은 사회유대관계의 약화이고,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된 청소년들이 **비행의 정의, 교제, 강화 등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비행행위가 나타나며, 이것이 지속될수록 비행은 그 사람의 안정적인 행동패턴의 한 부분이 된다고 보았다.

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 ③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 즉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없다.
- ②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동법 제82조).
- ③ 동법 제83조
-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동법 제84조 제1항).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관리한다.
-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①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동법 제8조 제2항).
-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동법 제7조).
-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 ②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 ③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 ④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 ①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호
 - ②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호
 - ④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더 알아보기

경비처우급 조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향 조정: 8점 이상[제66조 제1항 제4호(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
2. 하향 조정: 5점 이하

0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법무부장관
- ② 교정본부장
- ③ 지방교정청장
- ④ 소장

정답 ②

해설

- ②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제1항).

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중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① 동법 제16조 제2항 제2호
- ② 피치료감호자가 i)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중료되었을 때, ii)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 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iii)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제2항).
- ④ 동법 제31조

더 알아보기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및 제3호(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자: 15년
2. 제2조 제1항 제2호(마약 등 중독으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자: 2년

07 갑오개혁 이후의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 ②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 ③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 ④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①

해설

- ① 1895년 3월 25일의 제정된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에 따라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를 구금하고, 수사·소추하는 검찰기관과 심리·재판하는 재판기관도 분화되지 않았으며,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비로소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근대적 개념의 사법기관이 설치되었다. 각 재판소는 판사와 검사를 구분하여 판사는 재판을 전담하고 검사는 범죄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검사가 독자적인 지위와 직무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 ③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①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④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식·운동·식사·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 ① 동법 제71조 제1항
 - ② 동법 제71조 제5항 제2호
 - ③ 동법 제71조 제4항

 **더 알아보기**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부과할 수 있는 작업(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항)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1.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4.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 ②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 ③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 ④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억제이론은 고전주의의 입장으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적절한 형벌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② 처벌의 엄중성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처벌받을 가능성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처벌의 확실성'과 관련된다.
- ④ 범죄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 중에서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는 '처벌의 확실성'이다.

11 「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
- ① 동규칙 제60조
- ② 동규칙 제64조
- ④ 동규칙 제63조 제3항

 더 알아보기

사회복지업무 교도관의 직무(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

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자(“사회복지업무 교도관”)는 이 장 제1절(직무통칙)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용자의 서신·집필
2. 수용자의 종교·문화
3.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4. 수형자의 귀휴, 사회 견학,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5. 수형자의 사회복지 지원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 ②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 ① 동법 제59조 제2항
 - ③ 동법 제59조 제4항
 - ④ 동법 제61조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 ② 동법 제6조 제2항 본문
- ③ 동법 제8조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경비처우급 수형자 A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3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장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5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③ 개방처우급 수형자 C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자로 본인의 회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 ④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는 두 개의 범죄로 3년의 징역형과 5년의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3년 동안 복역 중인 자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③

해설

- ③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는 일반귀휴의 사유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 제3항 제1호).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귀휴사유 외에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이고, 그 형기의 3분의 1(2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동법 제77조 제1항).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어야 하며,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도 가능하다(동법 시행규칙 제129조 제2항). C의 경우는 개방처우급 수형자이고 6개월 동안 복역하였으나, 2년의 징역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특별귀휴의 사유이다. 특별귀휴의 경우는 일반귀휴와 같은 기간이나 경비처우급 등의 요건이 필요 없으며 특별귀휴사유에만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동법 제77조 제2항). 따라서 A에게는 특별귀휴의 허가가 가능하다.
- ② '손자의 결혼식'은 특별귀휴사유인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B는 특별귀휴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는 일반귀휴의 사유이다(동법 시행규칙 제129조 제3항 제3호). 그리고 일반귀휴의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1항). D는 완화경비처우급이고, 6개월 이상 복역하였으며 두 개의 범죄의 형기의 합산기간인 8년(3년 + 5년)의 3분의 1이 지났으므로 일반귀휴의 요건을 갖추었고, 귀휴의 허가가 가능하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 ④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제3항). 따라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i) 사회견학, ii) 사회봉사, iii)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iv)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따라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④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하는 것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동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있다.

16 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 ②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③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④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반성과 속죄를 유도하는 보안처분이다.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 ②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 ③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④

해설

- ④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직업경력 및 학력, 생활환경, 성장과정, 심리적 특성,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 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는 i)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ii) 갱생보호, iii)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iv)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v) 범죄예방활동, vi)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한다(동법 제15조).
- ② 동법 제3조 제3항
- ③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공단을 지휘·감독한다(동법 제9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97조 제2항).

18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 ④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 ㄱ. (×)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되는 것은 전환제도의 단점이다.
 - ㄴ. (○) 시설 내 처우를 중단하고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함양하도록 유도하여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ㄷ. (○) 경미한 범죄자에게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고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중(重)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의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ㄹ. (○) 시설 내 처우의 폐해를 고려할 때 전환제도를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실시는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수용자와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이 경우 보안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②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④ 동법 제54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20 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②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 ④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설문의 내용은 소년법 제25조의3의 보호사건에 있어서의 화해권고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화해를 권고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비행을 저질러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한 소년에 대하여 잘못된 심성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① 공식적인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하여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② 보호처분과 화해제도를 활용하여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화해의 과정에서 가해자 스스로 잘못을 초래한 점을 느끼고 반성하여 진정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